

대한민국연극제 운영 규정

대한민국연극제
운영(심사)규정안

2020. 02. 10.

(사) 한국연극협회

대한민국연극제 운영(심사)규정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대한민국연극제(이하 '본 대회'라 한다)의 운영(심사)규정이라 칭한다. [2016.3.14. 변경]

제2조 (목적)

본 대회는 대한민국연극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연극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경연과 축제의 병행으로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연극제를 통해 한국 연극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3조 (주최 및 주관)

본 대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사)한국연극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해당 지회에서 주관한다.

제4조 (조직구성)

본 대회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위원회와 집행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조직위원장은 한국연극협회 이사장이 맡고, 조직위원은 주관 시·도 지회장을 제외한 한국연극협회 이사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 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 [2016.08.31 추가]

집행위원장은 (주관 시, 도) 지회장이 맡고, 집행위원은 지회 이사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 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 [2016.08.31 추가]

제5조 (조직의 역할)[2017.04.17 조항 추가]

조직위원회는 본 대회의 종합계획(안)을 수립하고 행정지원 및 추진, 대회운영 주요사항의 심의조정을 총괄하며 집행위원회는 행사시작 6개월 전까지 본 대회 운영계획 및 실행계획안을 수립하고 조직위원회의 추진을 받아 실무집행 및 운영을 담당한다. [2017.04.17 개정]

조직위원회는 집행위원회에 직원을 파견하며 파견 직원의 인원 및 직급, 업무기간과 보수는 실행계획안으로 제안하고, 조직위원회와 집행위원회간의 협의를 거친다. [2017.04.17 개정]

본선 시상 중 주최지 자치단체장 및 관계 기관장 명의의 상금은 조직위원회와 집행위원회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2017.04.17. 개정]

제6조 (경연참가단체)

본 대회 본선경연 참가단체는 16개 광역시·도의 대표극단으로 지역예선대회를 거치거나 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대표극단이 참여한다. [2017.04.17 개정]

제7조 (경연참가자격)

참가 극단은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국연극협회 정단체로 한다.

연출자, 배우는 해당 시도 내 지회지부 소속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로서 대회 전년도 10월말까지

입회한 자여야 한다.

해당지역 정회원 50%이상 이어야 하며, 타지역 및 비회원 50%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2019.08.27. 개정] (아동, 코러스 등을 제외한 주 출연진의 비율을 말함. 비회원은 해당지역이 아니어도 됨. 코러스는 단역과 구분되며 단역은 대사가 있고 코러스는 대사가 없는 역을 말함. 단순한 구호제창은 대사에 포함되지 않음. 그 외의 사항은 대한민국연극제 조직위 소위원회에서 결정함.) 단, 비회원은 시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2019.03.30. 개정]

제8조 (경연참가작품)

국내 작가의 창작극(초연, 재공연 무관)에 한하여 참가할 수 있다.

- 국내창작극 기준
 - 국내 작가의 창작 희곡
 - 희곡을 제외한 타 장르 작품을 각색한 작품도 창작품으로 인정하나 반드시 원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외국 소설을 각색한 작품은 국내 창작극으로 볼 수 없다. [2018.04.30 개정]
- 작품 성격 및 규모에 따라 대극장과 중·소극장으로 나누어 공연할 수 있다. [2019.08.27. 추가]

제9조 (경연참가제한)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때는 경연참가가 제한되고, 이는 협회 정관 제9조 1항 명예 훼손에 대한 내부 규정안을 따른다. [2020.02.10. 개정]

제10조 (심사위원의 위촉 및 구성)

본 대회 심사위원은 연극계 전문 인사 중 심사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9인으로 구성하며 주최 측에서 위촉한다. 2인은 주관 처에서 해당지역 전문인사로 2배수 추천하고 주최 측과 협의하여 위촉 구성한다. 나머지 심사위원은 주최 측의 추천에 의해 구성한다. [2017.10.30. 개정]

심사위원은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 1) 심사위원은 부문, 성별, 연령, 활동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특정성향의 심사위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 2)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주최자(한국연극협회)가 지명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시상식 전에 경연자에 대한 심사결과 총평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

본 대회의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분	비고	배점
예술적 수월성 (100점) - 참여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	희곡의 우수성	25
	연출의 창의성	25
	배우들의 기량과 앙상블	25
	공연의 완성도	25
계		100

제12조 (수상자 결정)

채점표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방식으로 단체상·개인상의 항목별 순위를 정한다.
 신인연기상 자격은 데뷔 10년 이내 만38세 이하 (2019년 기준 1981년 이후 출생자) 정회원인 자로 참가단체의 추천을 받아 심사 후 선정하며, 신인상 후보가 없을 경우 연기상으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제13조(심사방법)

- 1) 심사위원은 사전에 수상 결과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2017.04.17 개정]
- 2) 각자 단체상을 수상할 7개 단체와 개인상을 수상할 8인을 추천한 후, 추천된 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토론하여 전원합의에 의해 상위 훈격 순서대로 수상단체 및 수상개인을 결정한다.
- 3) 전원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단체 및 개인수상자를 결정한다.
- 4) 연출상 수상대상은 참가 시·도 거주자에 한하며 희곡상은 창작초연작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 5) 심사위원은 심사의견서를 작성, 심사위원회 2차 회의 후 주최 측에 제출한다.
- 6) 최종 심사회익의는 녹취하며, 필요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2017.04.17. 개정]

제 14조 (시상훈격) [2019.08.27. 개정]

개인상에서 연기상, 신인연기상(남,녀)은 부분별 인원에 상관없이 총 9명에게 수여한다.

부문	등위	내 용	시상훈격	시 상 금	시상인원
연극	단체상	대 상	대통령상	30,000,000	1
		금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20,000,000	1
			주최지자체 시장상	20,000,000	1
		은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상	10,000,000	1
			한국연극협회 이사장상	10,000,000	1
			주최지자체 시의회 의장상	10,000,000	1
			주최지 상공회의소 회장상	10,000,000	1
	개인상	연출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	5,000,000	1
		희곡상	한국연극협회 이사장상	2,000,000	1
		무대예술상	한국연극협회 이사장상	2,000,000	1
		최우수연기상	한국연극협회 이사장상	5,000,000	1
		연기상	한국연극협회 이사장상	4,000,000	9
		신인연기상(남)	집행위원장상	2,000,000	
		신인연기상(여)	집행위원장상	2,000,000	

※ 대상 시상금은 지원금액에 따라 최대 1억까지 지급될 수 있음

제15조 (심사결과)

심사결과는 시상식장에서 발표하며 언론사에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16조 (수상자 결정 유보)

심사위원회는 각 부문별로 심사한 결과, 훈격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훈격 별로 시상을 유보할 수 있다.

제17조 (심사운영)

본 대회는 공정성과 공신력을 최선의 목표로 하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심사회의를 운영한다.

1) 주최 측은 심사에 있어서 일체의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심사위원이 철저히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2) 본 대회의 16개 시·도 참가대표, 지회장이 요청할 시에는 심사내용 원본을 공개 할 수 있다.

[2017.04.17 개정]

3) 본 대회의 본선경연내용은 비디오로 담아야 하고 비디오 장면에 정확한 일시가 표시되도록 한다.

부 칙('16. 3. 14) 운영규정 명칭 변경

- ① 전국연극제 운영규정을 2017년도부터 대한민국연극제 운영규정으로 변경.
- ② (시행일) 이 운영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6. 8. 31) 제4조(조직구성)

- ① 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 내용 추가.
- ② (시행일) 이 운영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6. 11. 14) 제6조(경연참가자격)

- ① 비회원 참가자격 내용 삭제.
- ② (시행일) 이 운영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6. 12. 26) 제5조(경연참가단체), 제7조(경연참가작품)

- ① 2017 한시적 연합단체 참가 허용.
- ② 외국 소설 각색 작품은 창작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③ (시행일) 이 운영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7. 4. 17) 제4조(조직구성), 제5조(조직의 역할), 제6조(경연참가단체), 제7조(경연참가자격), 제12조(심사방법), 제16조(심사방법)

- ① 주관으로 내용 수정.
- ② 제5조 (조직의 역할) 조항 추가, 내용 수정.
- ③ 단, 2017 한시적 연합단체는 참가 허용한다. 문구 삭제.
- ④ 제7조 (경연참가자격) 내용 수정.
- ⑤ 심사위원은 사전에 수상 결과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은 유지해야한다. 내용 수정.
최종 심사회의를 녹취하며, 필요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내용 추가.
- ⑥ 본 대회의 16개 시·도 참가대표, 지회장이 요청할 시에는 심사내용 원본을 공개 할 수 있다.

내용 수정.

- ⑦ (시행일) 이 운영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7. 10. 30) 제9조(심사위원의 위촉 및 구성)

- ① 심사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9인으로 구성. 및 문구 수정.
- ② (시행일) 이 운영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8. 04. 30) 제8조(경연참가작품)

- ① 창작초연작에 한하여 작품료 지급 조항 삭제 (16개 본선 참가작에 작품료 지급)
- ② (시행일) 이 운영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 03. 30) 제7조(경연참가자격) (심사운영)

- ① 코러스 등에 대한 사항 추가
- ② 제26조 심사운영 4번 삭제
- ③ (시행일) 이 운영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 08. 27)
제7조(경연참가자격), 제8조 (경연참가작품), 제13조(시상훈격)

- ① 제7조(경연참가자격) 타지역 및 비회원 50%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내용 수정
- ② 제8조(경연참가작품) 참가규모 내용 추가
- ③ 제13조(시상훈격) 시상인원 일부 수정
- ④ (시행일) 이 운영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 02. 10) 제9조(경연참가제한)

- ① 경연참가제한에 대한 조항 추가
- ② (시행일) 이 운영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